

2019.3.17~24
싱가포르

국외 출장 보고서

- 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 참석 -

2019. 4.

해운해사연구본부
해사안전연구실

국외 출장 보고서

- **과제명** :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 방안 연구
2019년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 대응 연구
- **출장자** :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박혜리 전문연구원
- **출장목적**
 - IMO 회원국 감사제도 시행 동향 조사 분석
 - IMO 회원국감사 시행 경과 조사 분석
 - 2020년 IMO 회원국감사 대응 전략 수립
 - 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 참석
 - IMSAS 프레임워크, 감사절차, 준비사항 식별
 - III Code에 따른 공통 의무, 기국 의무, 연안국 의무, 항만국 의무사항 분석·검토
 - 국제협약의 국내입법 반영 요구수준 파악
 - 사전질의서에 대한 모범 답변서 작성 방향 검토
- **출장지 및 일정**
 - 출장지 : 싱가포르
 - 출장일정 : 2019. 3. 17(일) ~ 2019. 3. 24(일) / 6박 8일

일자	방문일정	내용	비고
3.17(일)	이동 (부산→인천 →싱가포르)	○ 김해공항(10:25)→인천공항(11:35) ○ 인천공항(14:35)→싱가포르 창이공항(20:15)	KE1406 KE643
3.18(월) ~ 19(화)	싱가포르	○ 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(Theme I/II)	-
3.20(수)	싱가포르	○ 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(Theme III) ○ 회원국 감사 시행 경과 조사(IMO 담당부서)	-
3.21(목) ~ 22(금)	싱가포르	○ 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(Theme IV/V)	-
3.23(토) ~ 24(일)	이동 (싱가포르 →인천→부산)	○ 싱가포르 창이공항(22:30)→인천공항(05:45) ○ 인천공항(08:25)→김해공항(09:30)	KE644 KE1401

□ 출장 결과

[IMSAS 프레임워크(Res.A.1067(28))]

- (1.~4.) 목적 및 감사 표준
 - 본 지침의 목적은 IMO 회원국 감사의 목적, 원칙, 범위, 책임 및 역량구축 사항을 기술하는 데 있으며, 이 모든 것이 감사제도 전략을 구성함
 - IMO 회원국 감사 절차 및 IMO 협약이행 코드(III Code)를 기반으로 함
- (5.~6.) 감사 목적 및 원칙
 - 감사의 목적은 회원국이 해당 IMO 협약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정도를 관찰 및 평가함
 - 5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감사를 시행함(주권과 보편성/일관성, 공정성, 객관성 및 적시성/투명성과 공개성/협력/지속적 개선)
- (7.~6.) 감사 범위
 - 해양 인명 안전(safety of life at sea)
 - 선박으로 인한 오염 방지(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)
 - 선원을 위한 훈련, 인증 및 당직근무 표준(standards of training,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)
 - 만재흡수선(load lines)
 - 선박 톤수 측정(tonnage measurement of ships)
 - 해상 충돌 방지 관련 규정(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)
- (8.~9.) 책임 및 기술협력
 - IMO 사무총장, 회원국(수감국), 감사팀장의 책임 사항을 규정함

[회원국감사 감사절차(Res.A.1067(28))]

- 감사준비
 - 사전질의 답변서 작성: 일반정보와 체약국, 기국, 항만국, 연안국 의무에 대한 이행 현황 정보 제공
 - 감사관 후보자 지명: 회원국이 감사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으며, IMO 사무총장이 회원국이 지명한 후보 중 최종 선발함
 - 감사 일정 계획수립: 회원국과 IMO 사무총장의 협력각서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한 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며, 수감국(SPC) 및 감사팀장이 협의하여 최종 계획 수립. 감사 1일전 감사팀 회의를 통해 전체 감사 일정 점검함

- 감사수감
 - 감사 착수회의, 현장감사, 감사 종료회의 등 감사기관 및 참석자 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필요
 - 감사중간보고서(Audit interim report), 감사요약보고서(Executive summary report), 최종보고서(Audit final report), 시정조치계획(Corrective action plan) 등에 대한 검토 필요
- 후속조치
 - 시정조치 경과보고: 감사 시 지적된 발견사항 및 관찰사항에 대하여 수감국에서 제출한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이행 중간보고
 - 회원국 감사 실시 이후 4년 이내에 후속감사 결정

[III Code에 따른 의무사항 분석]

- PART 1 - 공통사항
 - 기국,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국제적 의무 및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전략 제시 필요
 -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법제처, 해양경찰청 등 국가 전반의 해양안전·환경 의무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종합전략 필요
 - 초기조치(Initial actions)의 경우 실제 감사사례에서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며,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, 물적·인적자원이 필요함
 - IMO GISIS 등을 활용하여 국내법령 정보 및 보고사항 등을 IMO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보고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
- PART 2 - 기국
 - 기국의 책임 및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하며,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자원, 절차, 인력을 갖추어야 함
 - 필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, 검사관, 감사관, 조사관 등에 대한 자격요건 및 교육·훈련 현황 검토 필요함
 - 기국은 대행기관에 대한 감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관리감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 대행기관(RO)의 경우 한국선급(KR), 프랑스선급(BV), 선박안전기술공단(KST), 한국해양수산연수원(KIMFT) 등이 있음
- PART 3 - 연안국
 - 무선통신 서비스, 기상 서비스 및 경보, 수색구조 서비스, 수로정보 서비스, 항

로지정, 선박 보고 시스템, 해상교통관제시스템, 항로표지 등 연안국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을 파악하고, 연안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및 자원, 주기적 평가 등에 대한 점검 필요

○ PART 4 - 항만국

- 폐기물 수용시설 운영, 항만국통제 시행, 연료유공급자 목록 유지 관리 등 등 항만국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을 파악하고, 항만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및 자원, 주기적 평가 등에 대한 점검 필요

[사전질의서에 대한 모범 답변서 작성 방안]

-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사전질의서를 분석하여 체약국, 기국, 연안국, 항만국의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·시행 현황을 제시할 것
- (일반정보) 수감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체약국, 기국, 항만국, 연안국의 해당 의무사항을 점검하고, 관계 기관 및 업무 등을 제시할 것
- (체약국) 수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·시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문항으로 전략, 국내 입법체계, 협약이행 체계, 기록 및 개선조치 등을 제시할 것. 감사 대응 시 실제 이행 및 시행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, 체약국으로서의 공동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
- (기국) 사전질의서 중 가장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서 기국으로서의 다양한 의무이행 현황을 점검하고, 대항기관(RO)에 대한 관리·감독 이행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. 기국검사, 해양사고 조사, 해기사면허 발급·관리 등 다양한 부서 및 기관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국 의무이행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(자체 평가방법 포함)가 중요한 관점임. 해당 문항과 관련하여 현장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방청 및 관계기관의 준비가 필요함
- (연안국) 연안국 의무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, 해양경찰청, 국립해양조사원 등 의무 이행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, 이행조치, 교육 및 평가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
- (항만국) 폐기물 수용시설 운영 등 주기적으로 의무 이행결과에 대해 IMO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서를 기반으로 이행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할 것. 항만국통제의 경우 Tokyo MOU 협력 등을 기반으로 의무이행 우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 준비할 필요가 있음

□ 기대효과

- 국내 해사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IMO 규제 동향 및 新해사산업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, 국내 대응 정책 수립 및 정책 방향 개발
-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 참석을 통해 국내 2020년 회원국감사 준비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준비방안 식별
- 해사안전·환경분야의 국가별 정책 추진방향 검토 및 회원국감사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논의

□ 향후 추진계획

- ‘2019년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 대응 연구’ 착수보고회
 - 일시/장소 : 2019.04.25.(목) 14시(예정) / 해양수산부 회의실
 - 참석자 : 해양수산부, KMI, KST, 자문위원 등
- 4월 연구진회의
 - 일시/장소 : 2019년 4월 3주차 /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회의실
 - 참석자 : KMI 및 KST 참여연구진 등
 - 회의내용 : ‘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’ 결과 공유
2020년 IMO 회원국감사 대응 전략 방향 논의 등

[붙임 1] 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 결과

붙임 1

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 결과

I. 회의 개요

- 회의명 : 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
- 기간/장소 : 2019.3.18(월)~2019.3.22(금) / 싱가포르 MPA Academy
- 참가자 : 총 22명
 - 한국대표 : 최정인(해양수산부), 박혜리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II. 회의일정

일 정	내 용	강 사 진
[1일차]		
09.00-09.30	Registration of participants	-
09.30-09.45	Opening Host	-
09.45-10.00	Introduction to the workshop/ objectives/logistics	Lecturer 1
Theme I: Background,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Audit Scheme, Audit Standard		
10.00-10.45	IMO Member State Audit Scheme-Background and latest development	Lecturer 1
10.45-11.15	Coffee Break	-
11.15-12.00	Framework	Lecturer 1
12.00-12.45	Procedures (Sections 1 to 5)	Lecturer 2
12.45-14.00	Lunch	-
14.00-15.00	Procedures (Sections 6 to 11)	Lecturer 2
15.00-15.30	Procedures (Appendices)	Lecturer 2
15.30-16.00	Coffee	-
16.00-16.45	Exercise 1 (Framework and Procedures)	Lecturer 1
16.45-17.00	Questions and discussion Evening exercise(Identificationofresponsibilities)	Lecturer 1
[2일차]		
09.00-09.45	Ill Code Part 1 & 2	Lecturer 1
09.45-10.30	Ill Code Part 3 & 4, 2017 Non-exhaustive list of obligations under instruments relevant to 111 Code	
10.30-11.00	Coffee break	
Theme II: Overview of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		
11.00-12.30	Legislating for a treaty (e.g. SOLAS 1974, MARPOL 73/78, LL 66, COLREG 1972, Tonnage 1969)	Lecturer 2
12.30-13.30	Lunch	-
13.30-14.00	Overall Strategy - part 1	Lecturer 1

14.00-15.00	Exercise 2 (Sort out findings in preparation for the following lectures)	Lecturers
15.00-15.30	Coffee break	-
15.30-17.00	Flag State activities	Lecturer 1
[3일차]		
9.00-9.45	Coastal State activities	Lecturer 1
9.45-10.30	Port State activities	Lecturer 2
10.30-11.00	Coffee break	-
11.00-11.45	Member State Preparation for the Audit (General)	Lecturer 1
Theme III: Preparation for the Audit		
11.45-12.30	Preparation and review of a Pre-audit questionnaire	Lecturer 2
12.30-13.30	Lunch	-
13.30-15.00	Workshop 1 (Preparing pre-audit questionnaire)	Lecturers
15.00-15.30	Coffee break	-
15.30-16.15	Workshop 1 (cont.)	Lecturers
16.15-17.00	The Audit Process	Lecturer 1
[4일차]		
09.00-10.00	Workshop 2 (Identification of issues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an audit area)	Lecturers
Theme IV: Conduct of an audit and Post audit activities		
10.00-11.00	Audit Findings and Reporting	Lecturer 2
11.00-11.30	Coffee break	-
11.30-13.00	Exercise 3 (Identification of Findings with references)	Lecturers
13.00-14.00	Lunch	-
14.00-14.30	Overall Strategy - part 2	Lecturer 1
14.30-15.15	Audit Analysis	Lecturer 2
15.15-15.45	Coffee break	-
15.45-16.30	MS corrective action and follow-up	Lecturer 1
16.30-17.00	Workshop 3 - Identification of root causes and development of corrective actions	Lecturers
[5일차]		
Theme V: Review and closure		
09.00-10.00	Workshop 3 - Identification of root causes and development of corrective actions	Lecturers
10.00-11.00	Road Map and Action Plan for preparation for IMSAS audit	Lecturers
11.00-11.30	Coffee break	-
11.30-12.15	Road Map and Action Plan for preparation for IMSAS audit	Lecturers
12.15-13.00	Workshop appraisal	-
13.00-13.30	Concluding remarks and Closing Ceremony	-

III. 주요 회의 결과

1. IMSAS 프레임워크(Res.A.1067(28))

- (1.~4.) 목적 및 감사 표준
 - 본 지침의 목적은 IMO 회원국 감사의 목적, 원칙, 범위, 책임 및 역량구축 사항을 기술하는 데 있으며, 이 모든 것이 감사제도 전략을 구성함
 - IMO 회원국 감사 절차 및 IMO 협약이행 코드(III Code)를 기반으로 함
- (5.~6.) 감사 목적 및 원칙
 - 감사의 목적은 회원국이 해당 IMO 협약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정도를 관찰 및 평가함
- .1 감사 표준 준수 여부
- .2 회원국이 해상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IMO 협약의 당사자로서 해당 협약에 관하여 적절한 법률을 제정했는지 여부
- .3 회원국이 관련 법령을 집행 및 시행하는지 여부
- .4 회원국의 권한을 공인 기구에 위임하는 기준이자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유효한 메커니즘 및 관제가 시행 중인지 여부
- .5 회원국 및 해당 공인 기구의 자체조사 및 인증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관제, 모니터링, 피드백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 여부
- .6 회원국이 해당 IMO 협약에 따른 여하한 책무를 이행하는 정도
 - 5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감사를 시행함(주권과 보편성/일관성, 공정성, 객관성 및 적시성/투명성과 공개성/협력/지속적 개선)
- (7.~6.) 감사 범위
 - 해양 인명 안전(safety of life at sea)
 - 선박으로 인한 오염 방지(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)
 - 선원을 위한 훈련, 인증 및 당직근무 표준(standards of training,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)
 - 만재흡수선(load lines)
 - 선박 톤수 측정(tonnage measurement of ships)
 - 해상 충돌 방지 관련 규정(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)
- (8.~9.) 책임 및 기술협력
 - 사무총장

- .1 감사 제도를 이행한다.
 - .2 감사팀장과 감사관 책임자를 공식 임명하고 그 목록을 유지한다.
 - .3 회원국 별 감사를 위한 감사팀을 구성한다.
 - .4 감사 절차 4항에서 정한 대로 감사팀장 및 감사관의 역량을 확보한다.
 - .5 감사 질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관이 필수 훈련 표준에 부합도록 한다.
 - .6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국과의 협력 각서를 체결한다.
 - .7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팀이 관련 정보 일체를 제공받도록 한다.
 - .8 감사 계획이 IMO 전체 감사 일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.
 - .9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이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(ITCP :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)과 같은 외부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한다.
 - .10 실제 감사에 앞서 감사팀장이 감사 제도의 취지, 감사 범위, 감사 실시 방법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감사팀과 피감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보 일체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감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피감국에 제공한다.
 - .11 상호 합의한 요약보고서를 모든 회원국 또는 일반 대중에게 알린다.
 - .12 통합 요약보고서는 표준화된 서식으로 작성하며, IMO의 업무 지원을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발행한다.
 - .13 회원국에 대한 실제 감사 결과 얻은 발견사항 및 관찰사항에 관한 기록을 적절히 유지한다.
 - .14 감사제도 및 가능한 후속 조치를 관리한다.
- 회원국
- .1 협력각서에 따라 감사 실시에 전적으로 협조한다.
 - .2 지정된 감사팀장 및 감사팀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IMO 사무총장과 합의한다.
 - .3 시정조치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감사팀의 발견사항에 응답한다.
 - .4 감사 실시에 앞서 요약보고서, 시정조치계획, 시정조치계획의 이행과정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공개를 승인한다.
 - .5 발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 완료 후 3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 프로그램을 이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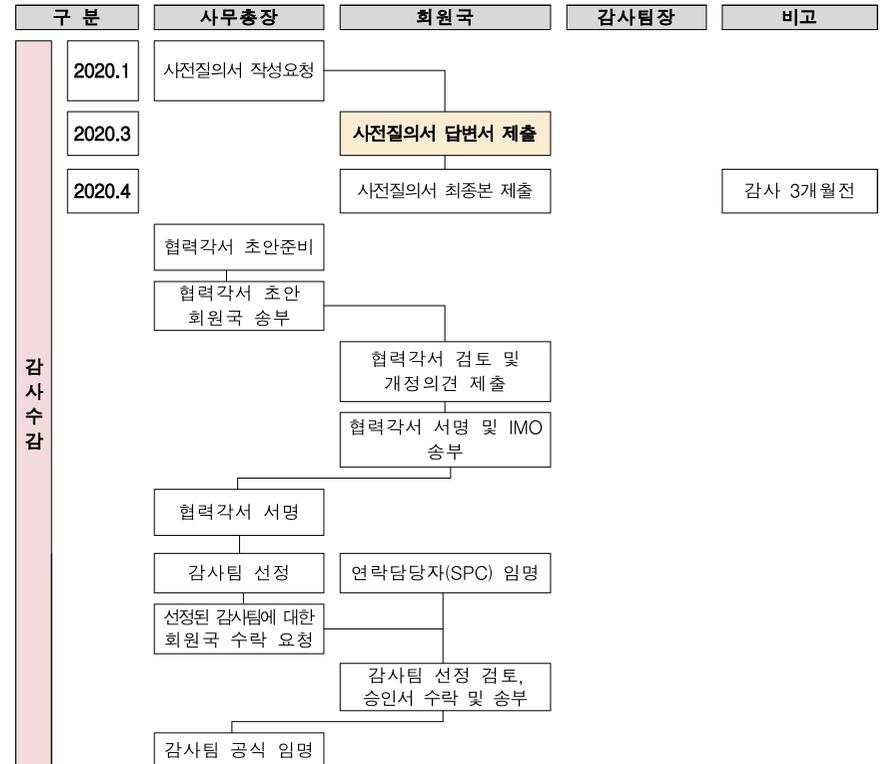
- .6 시정조치 완료 후 IMO 사무총장에게 이를 고지한다.
- 감사팀장
 - .1 실제 감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.
 - .2 감사팀이 감사 관련 정보를 완전히 숙지하도록 한다.
 - .3 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 면담 및 회의 등을 실시하고, 그러한 면담, 회의 등을 진행하는 감사관에게 전반적인 책무를 위임하고 관리한다.
 - .4 감사 보고서(중간 및 최종)와 임무보고서를 작성 및 완성한다.
 - .5 피감국에 발견사항 및 관찰사항을 상세히 보고한다.
 - .6 IMO 사무총장 제출용 요약보고서를 피감국과 함께 준비하고 그에 대해 합의한다.
 - .7 피감국의 시정조치 검증을 지원한다.
 - .8 적절한 경우 후속 감사를 실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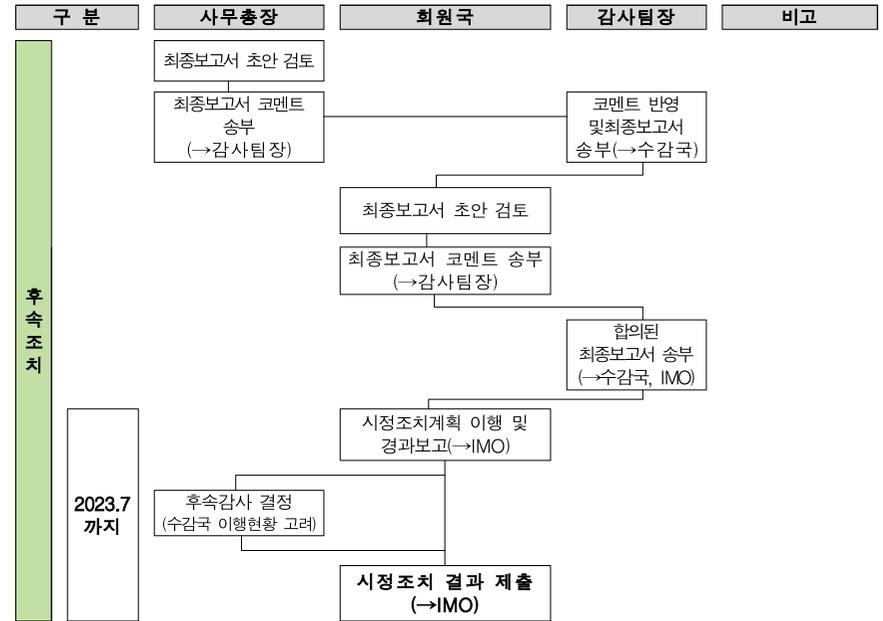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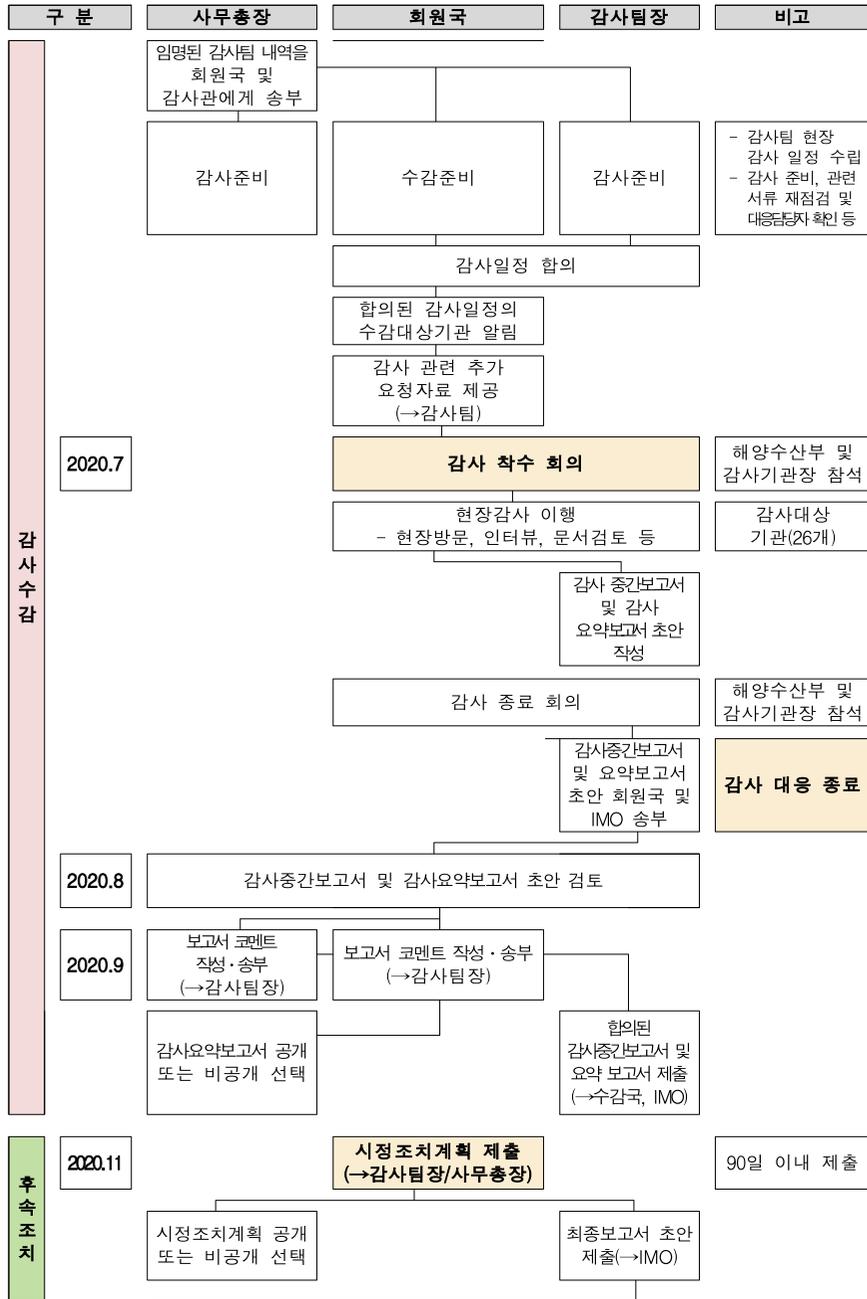
2. 회원국감사 감사절차(Res.A.1067(28))

- 정의
 - 발견사항(Finding):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불 때 IMO 협의 또는 감사표준에서 제시한 필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 사항
 - 관찰사항(Observation): 감사표준에서 제시한 임의 조항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에 따라 입증된 사실에 대한 진술
- 사전질의 답변서 작성
 - 일반정보와 체약국, 기국, 항만국, 연안국 의무에 대한 이행 현황 정보 제공
 - 필요 시 감사팀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감사관 후보자 지명: 회원국이 감사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으며, 해당 감사관은 일련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써 감사 기량, 기술, 경험 등을 고려할 것
 - IMO 사무총장이 회원국이 지명한 후보 중 선발하며,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팀이 최종 구성됨
- 감사 일정 계획수립
 - 회원국과 IMO 사무총장의 협력각서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한 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며, 수감국(SPC*) 및 감사팀장이 협의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함
 - * 연락담당자(SPC): 국가 해양안전·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한 자
 - 감사 1일전 감사팀 회의를 통해 전체 감사 일정을 점검하고, 수감국(SPC)과

최종 합의함

- 감사 착수회의: 감사팀장의 주재하며, 해수부 등 관계기관장이 참석함
- 감사 이행
- 감사 종료회의
 - 발견사항과 관찰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제언을 감사팀장으로부터 확인
- 보고서 검토 및 제출
 - 감사중간보고서(Audit interim report), 감사요약보고서(Executive summary report), 최종보고서(Audit final report), 시정조치계획(Corrective action plan)
- 시정조치 경과보고
 - 감사 시 지적된 발견사항 및 관찰사항에 대하여 수감국에서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보고
 - 후속감사는 회원국 감사 실시 이후 4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 안에 시행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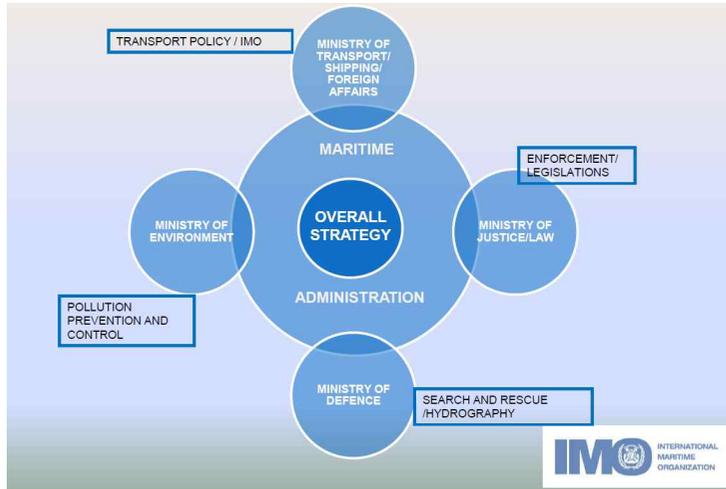




3. III Code에 따른 의무사항 분석

[PART 1 - 공통사항]

- 목적(Objective)
 - 국제해사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강화하고 IMO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
- 전략(Strategy): 기국,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국제적 의무 및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전략 개발
 -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법제처, 해양경찰청 등 국가 전반의 해양안전·환경 의무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종합전략 필요
 - 기국,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서 전체적인 조직성과 및 역량의 달성,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 필요



- 초기조치(Initial actions): IMO의 새로운 협약 또는 개정협약 발효 시 국내법령 등을 통한 관련 협약 수용
 - 실제 감사사례에서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며,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, 물적·인적자원이 필요함
- 정보의 교환(Communication of information)*
 - IMO GISIS 등을 활용하여 국내법령 정보 및 보고사항 등을 IMO에 전달
 - * FSI 20-INF.14 - List of reporting requirements in selected mandatory IMO instruments (Secretariat)
 - MEPC 68-14-1 - Notification and circulation through GISIS -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IMO environment- (Secretariat)
 - 실제 감사 시 GISIS 모듈 검토를 통해 실제 제출 여부 확인**
 - ** 「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」 검토 필요
- 개선(Improvement): 협약의 시행을 위한 조치들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
 - 안전 및 오염방지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
 - 해사관련 국가/지역/세계적 기관, 회사 및 선원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위한 지역/국가 훈련
 - 안전 및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선사 및 선원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의 이용 등

[PART 2 - 기국]

- 협약준수(Implementation)
 - 기국의 책임 및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하며,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자원, 절차, 인력을 갖추어야 함
- 권한 위임(Delegation of authority): 협약요건 또는 국내법에 따라 대항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기국은 요건에 따라 적절히 관리·감독해야 함
 - 우리나라 대항기관(RO)의 경우 한국선급(KR), 프랑스선급(BV), 선박안전기술공단(KST), 한국해양수산연수원(KIMFT) 등이 있음
 - 기국은 대항기관에 대한 감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관리감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함
- 기국 검사관(Flag State surveyors)
 - Minimum academic qualifications
 - Minimum experience
 - General qualifications
 - Other personnel assisting
 - Formal training programme(해당 임무에 상응하는 교육, 훈련 및 감독 이행)
 - Documented system(인원의 자격을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 이행)
 - Identification document(검사관의 임무수행 시 소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발급)
- 기국 사고조사(Flag State investigations)
 -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, 기국은 조사관이 통상임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업무지식 및 실무경험을 가질 것을 보장해야 함
- 평가 및 검토(Evaluation and review)
 - 국제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, 과정 및 자원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함
 - 기국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항만국통제출항정지율, 기국점검결과, 사고통계, 정보제공 절차, 연간 손실통계(추정전손 제외) 및 기타 필요한 성과지표를 포함

[PART 3 - 연안국]

- 연안국의 의무 및 책임
 - 무선통신 서비스(radiocommunication services): SOLAS CH.4 Part.B Reg.5
 - 기상 서비스 및 경보(meteorological services and warnings): SOLAS CH.5 Reg.4-5

- 수색구조 서비스(search and rescue services): SOLAS CH.5 Reg.7
- 수로정보 서비스(hydrographic services): SOLAS CH.5 Reg.9
- 항로지정(ships' routing): SOLAS CH.5 Reg.10
- 선박 보고 시스템(ship reporting systems): SOLAS CH.5 Reg.11
- 해상교통관제시스템(vessel traffic services): SOLAS CH.5 Reg.12
- 항로표지(aids to navigation): SOLAS CH.5 Reg.13
- 평가 및 검토(Evaluation and review)
 - 연안국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, 과정 및 자원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함

[PART 4 - 항만국]

- 항만국의 의무 및 책임
 - 폐기물 수용시설: MEPC 1/Circ.834/Rev.1
 - 항만국통제: Res. A 1119(30)
 - 연료유공급자 목록 유지 관리: MARPOL Annex VI Reg. 18.9
- 이행(Enforcement)
 - 항만국의 의무 이행 및 권한 행사시 국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
 - 항만국통제는 IMO에서 채택한 관련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자격 있는 항만국통제관에 의해서만 시행
- 평가 및 검토(Evaluation and review)
 - 항만국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, 과정 및 자원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함

4. 사전질의서(PAQ)에 대한 모범 답변서 작성방안

- 일반정보 질의사항
 - 수감국 내 협약별 담당 부서 및 해당 부서의 구성에 대한 현황
 - 협약이행을 위한 정부기관 인력현황
 - 수감국에 소속된 선박과 항만의 규모 등
 - 대행기관의 정보 및 수행기능 등
- ⇒ 수감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체약국, 기국, 항만국, 연안국의 해당 의무사항을 점검하고, 관계 기관 및 업무 등을 제시할 것

- 체약국 질의사항 관련 국내 현황 조사·분석
 - 수감국의 전략, 일반사항, 범위, 기록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
 - 기국, 항만국, 연안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
 - 관련 국제 강제 규정의 효과적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론 수립 등
 - IMO 국제협약의 국내입법 절차 및 IMO 통보 여부 등
 - 모든 활동들이 단지 강제적인 법률이나 행정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수감국 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등
- ⇒ 수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·시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문항으로 전략, 국내 입법체계, 협약이행 체계, 기록 및 개선조치 등을 제시할 것
- 감사 대응 시 실제 이행 및 시행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, 체약국으로서의 공통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

구분	의무사항(사전질의서 내용 포함)	III Code	관계기관
공통 의무	IMO 협약 이행 및 시행	1조-2조	공통
	전략계획의 수립 및 주기적 검토	3조, 9조	공통
	협약의 국내입법체계	4조-5조	공통
	협약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및 정보공유체계	6조-7조	공통
	기록유지	10조	공통
	국내법 이행 감시 및 개선조치	11조-14조	공통

- 기국 질의사항 관련 국내 현황 조사·분석
 - 기국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
 - 기국으로서 법률적·행정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이행에 대한 관리·감독의 역할 수행 현황
 - 대행기관 및 지정검사원의 지정을 통한 책임소재 확인 및 효율적 관리 현황
 - 위반사항 및 후속조치에 대한 장기적·지속적 이행 관리 현황
 - 기국검사관 등의 채용요건 및 교육 현황
 -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고조사 현황 등
- ⇒ 사전질의서 중 가장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서 기국으로서의 다양한 의무이행 현황을 점검하고, 대행기관(RO)에 대한 관리·감독 이행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

기국검사, 해양사고 조사, 해기사면허 발급·관리 등 다양한 부서 및 기관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국 의무이행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(자체 평가방법 포함)가 중요한 관점임

해당 문항과 관련하여 현장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방청 및 관계기관의 준비가 필요함

구분	의무사항(사전질의서 내용 포함)	III Code	관계기관
기국 의무	기국 의무이행 (기국선박 점검, 해양사고 조사, 해기사면허 발급 등)	15조-16조	해사산업기술과 선원정책과
	정부권한의 대행기관 위임	18조-21조	한국선급 프랑스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
	협약이행 점검·관리 및 국제증서 발행	22조-27조	해사산업기술과 선원정책과
	기국검사관 자격요건 및 교육	29조-36조	해사산업기술과
	해양사고 조사	40조-41조	중앙해양안전 심판원
	기국 의무이행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	42조-44조	공통

○ 연안국 질의사항 관련 국내 현황 조사·분석

- 연안국 의무 및 권리의 협약 준수 현황

- 주요 III Code 요건 이행 현황의 평가 및 향후 과제 관리 현황

-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통한 의무 이행 성과평가 현황 등

⇒ 연안국 의무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, 해양경찰청, 국립해양조사원 등 의무 이행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, 이행조치, 교육 및 평가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

구분	의무사항(사전질의서 내용 포함)	III Code	관계기관
연안국 의무	연안국 의무이행 및 시행 (무선통신서비스 제공, 선박보고시스템 운영, 수색구조, 수로, 항로지정, 기상정보 제공 등)	45조-50조	해양환경정책과 항만운영과 항로표지과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
	연안국 의무이행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	51조	공통

○ 항만국 질의사항 관련 국내 현황 조사·분석

- 항만국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이행 실태

-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통한 의무 이행 성과평가 현황 등

⇒ 폐기물 수용시설 운영 등 주기적으로 의무 이행결과에 대해 IMO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서를 기반으로 이행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할 것
항만국통제의 경우 Tokyo MOU 협력 등을 기반으로 의무이행 우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 준비할 필요가 있음

구분	의무사항(사전질의서 내용 포함)	III Code	관계기관
항만국 의무	항만국 의무이행 및 시행 (폐기물 수용시설 운영, 항만국통제 시행, 연료 공급업체의 등록관리 등)	52조-61조	해사안전정책과 항만운영과 해양환경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경찰청
	항만국통제 검사관 역할	62조	해사안전정책과
	항만국 의무이행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	63조	공통

